

2000. 4. 1.(토)

제58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

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總務委員會

##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### 심사 보고서

#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3. 22. 제천시장  
나. 회부일자 : 2000. 3. 22.  
다. 상정일자 : 2000. 3. 29. (제5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#### 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사회복지과장 이춘호)

##### 가. 제안이유

- 제천시 여성회관을 위탁 관리함에 있어 정지 및 취소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임.

##### 나. 주요내용

- 삭제 : 동조례 제6조의 “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사유”를 삭제함
  -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회관의 운영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위탁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때 등과
  - 시장이 회관의 운영관리 및 감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신태훈)

#### ○ 법적검토

-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 모법이라 할 수 있는 “지방재정법”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상에는 공유재산중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시 취소 및 정지등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없음에도
- 동 조례 제6조에는 “운영을 불성실”, “사업을 위탁하지 않은때”, “시장이 운영관리 및 감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”등 포괄적인 취소 및 정지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자의적이고도 불필요한 규제의 소지가 존재함으로 동조례 내용에서 삭제하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동조례의 관련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내지 제135조에서도 규제의 근거는 찾아 볼 수 없었음.

#### ○ 행정적 검토

- 여성회관은 지방재정법 제72조 제2항에서 명시한 분류기준에 따르면, 행정재산중 공용재산으로 현재의 관리 주체는 시장으로 되어 있고 다만, 행정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식실은 민간에 사용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임.
- 따라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는 위탁관리상의 규제조항은 불필요하며, 사용허가된 부분에 대하여

여는 “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”에 근거한 사용허가 행위 제한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 등 사유를 적용한다면 관리상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「행정자치부 지방규제개혁 지원단」의 권고를 받아들여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다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같은 성질의 공유재산중 행정재산의 관리 기준상 규제 조항의 존치여부도 균형감각을 살려 향후 보완 정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.

## 4. 질의 답변 요지

### 가. 질의

- 1) 동 조례 6조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사항이 시행규칙이나 별지 계약서에도 포함되어 있는지 ? (조병석 위원)
- 2) 여성회관등 시 관리 공유재산이 많은데 본 개정사항은 시 전체 공유재산관리에도 총괄 적용하여야함에도 못한 사유는 ? (민경환 위원)
- 3) 동 조례 6조 삭제와 관련하여 10조(강사초빙), 11조(업무감사)등에서 여성회관의 수탁 및 위탁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? (장기훈 위원)

### 나. 답변 (사회복지과장 이춘호)

- 1) 시행규칙에는 동 조례6조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, 계약서 경우는 쌍방간 대등계약이므로 특별한 규제나 문제점은 없음.

- 2) 차후 공유재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개정토록 하겠음.
- 3) 여성회관의 수탁 및 위탁관리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## 5. 토론요지

없음.

## 6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## 7. 심사보고 불임서류

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 끝.